

#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

## 심사보고서

2025. 10. 14.

복지문화위원회

의안 번호	612
----------	-----

### 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5. 9. 30. 강남구청장(보육지원과)

나. 상정의결

- 제330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문화위원회 제1차 회의(2025. 10. 14.)  
“원안가결”

### 2. 제안설명 요지(복지생활국장 : 이용달)

가. 제안이유

- 영유아들에게 양질의 공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 맞벌이 부모들의 저출산, 육아의 부담을 덜어주는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을 경험과 전문성이 있는 법인,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고자 함.
- 이에 공개모집을 통한 재위탁 추진을 위하여 「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5조(승인 및 동의)에 따라 강남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위탁사무명 :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(삼성어린이집 외 3개소)

○ 추진근거 및 필요성

- 추진 근거

- 「영유아보육법」 제24조(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)
- 「서울특별시 강남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17조(위탁운영)
- 「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5조(승인 및 동의)

- 필요성

- 영유아 보육에 경험과 전문성이 있는 법인,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여 양질의 공보육 서비스 제공 및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자 함.

○ 위탁사무 내용 및 범위

-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: 아동 입소·상담, 보육서비스 제공, 안전 및 건강 관리, 조직·인사·회계 등
- 수탁재산의 관리: 시설, 장비, 비품 등의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무 전반
- 그 외 영유아 복지 향상을 위한 위탁자가 정하는 사업 등

○ 민간위탁기간 : 2026. 3. 1. ~ 2031. 2. 28.(5년)

○ 수탁기관 선정방식 : 공개경쟁

- 공개모집 후 보육정책위원회 심의·의결 70점 이상 최다득점 운영체 선정

다.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: 적정

라. 참고사항 (관계법령)

- 「영유아보육법」 제24조(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)

**제24조(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)** ① 어린이집을 설치·운영하는 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운영기준에 따라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.

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 이 경우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심의하며, 최초 위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.

- 「서울특별시 강남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17조(위탁운영)

**제17조(위탁운영)** ① 구청장은 구립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거나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 이 경우 최초위탁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.

- 「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5조 (승인 및 동의)

**제5조(승인 및 동의)**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는 그 사무를 위임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, 자치사무는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② 제1항의 구의회 동의는 신규, 재위탁 및 위탁사무의 중요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로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.

1.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
2. 재계약 하는 경우

### 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: 이미영)

#### I. 동의안 제출 배경

- 본 동의안은 국공립어린이집 4개소(삼성, 수서, 예지, 한별)에 대해 공개모집을 통한 재위탁을 추진하기 위하여 「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(이하 “민간위탁 조례” 라 한다) 제5조(승인 및 동의)에 따라 사전에 강남구의회 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임.
- 한편, 민간위탁 조례 제6조(민간위탁 동의안)에서는 구의회에 제출하는 동의안에 “위탁사무명, 위탁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, 위탁사무 내용 및 범위, 위탁 시설 개요(소재지, 규모, 지원시설, 위치도), 민간위탁기간, 수탁자 선정방식, 소

요예산 및 산출근거,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” 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, 본 동의안에는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관련 조례상의 내용을 준수하여 제출한 것으로 보이고, 민간위탁 조례 제4조의2에 따른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결과는 “적정” 으로 제출됨.

## II. 주요사항의 검토

### 가. 민간위탁 동의안의 주요 내용

- 민간위탁 대상은 국공립어린이집 4개소(삼성, 수서, 예지, 한별)이며 위탁하려는 사무의 내용은 ▶아동 입소·상담, 보육서비스 제공 등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, ▶수탁재산 관리, ▶그 외 영유아 복지 향상을 위한 위탁자가 정하는 사업 등임.
- 위탁 기간은 5년(2026. 3. 1. ~ 2031. 2. 28.)으로 제출되었고, 동의안 가결 시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 후 보육정책위원회 심의에서 70점 이상 최다 득점을 받은 운영체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될 예정임. 이는 「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」에 따른 것으로 타당함.

### 나. 성과평가 관련

- 민간위탁 조례 제19조(성과평가)제1항에 따라 구청장은 민간위탁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위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나, 같은 항 단서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·규칙에 따라 평가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.
  - 어린이집은 「영유아보육법」 제30조(어린이집 평가)에 따라 정기적으로(3년) 평가를 받기 때문에 민간위탁 조례 제19조제1항단서에 근거하여 이를 성과평가로 갈음함.
- 부서 자료 확인 결과 이번 민간위탁 대상 어린이집에 대한 「영유아보육법」 제30조(어린이집 평가)에 따른 평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임.
  - 그런데 삼성어린이집, 수서어린이집, 한별어린이집의 경우 평가 결과 특별한 내용은 확인할 수 없었으나, 예지어린이집의 경우 보육과정 평가 및 기관 운영 지표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어린이집 정보공개포털(9/30 기준)에는 「영유아보육법」 제30조제4항에 따른 재평가 중으로 안내되어 있

는바 구체적인 개선 사항 및 현재 조치 여부 등에 대한 부서 설명이 필요해 보임.

#### 다. 민간위탁의 적정성

- 어린이집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·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운영되는 시설로서 ①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보육 서비스의 특성상 보육 및 교육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운영 노하우가 요구된다는 점, ② 관계 법령과 지침에 어린이집 위탁체 선정 및 회계관리, 보육교직원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 있는 점, ③ 행정의 효율과 보육서비스 안정적 제공을 위해 그동안 구립어린이집이 민간위탁으로 운영되어 왔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전문성과 현장경험을 갖춘 전문기관에 어린이집 운영을 민간위탁하려는 것은 그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보임.

### Ⅲ. 종합의견

- 어린이집 운영은 관계 법령에 따른 민간위탁 대상 사무에 해당하므로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배경에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, 민간위탁을 통해 민간이 보유한 전문성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게 될 경우 안정적인 보육서비스 제공으로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발달은 물론 보호자의 경제적·사회적 활동을 원활히 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.
- 따라서 민간위탁 동의 여부는 전문성과 공공성을 요하는 어린이집의 기능과 역할, 보육서비스의 전문성과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사안이며, 본 동의안이 가결될 경우 집행부에서는 보육서비스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수한 수탁자 선정 노력은 물론 민간위탁 목적 달성을 위해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임.

**4. 질의 및 답변 요지 : “없음”**

**5. 토론 요지 : “없음”**

**6. 심사결과 : “원안가결”**

**7. 소수의견의 요지 : “없음”**

**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**

붙임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. 끝.